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건 서

(김경 의원)

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.

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김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2586호,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환경영향평가법」과

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

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에 해당될 경우,

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

☐ 지역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

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

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
☐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